



NO.2017-ETC-03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The Republic of Korea
Phone : + 82-70-8799-8330
Fax :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Date : 10 April 2017
Person in charge : Kim Hoi-Jun

Subject : USCG BWM 관련규정의 연장신청 - Rev.2

미국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는 미국항내에 입항하는 선박들에게 적용되는 선박평형수 관리장치 탑재규정에 관련된 최종법안(Final Act)를 발표하였으며,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여부에 상관없이 2013년 12월 1일(신조선 기준)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선급에서는 USCG 선박평형수 관련규정의 상세, 평형수 대체관리 장치의 목록, 연장신청 접수 및 USCG IL(Independent Laboratory)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난 기술정보를 통하여 수차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USCG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BWMS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함을 고려하여 최근 USCG는 연장신청 접수에 관한 개정사항을 추가로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된 연장신청 접수에 관련된 사항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1. USCG 형식승인을 득한 BWMS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USCG는 여전히 연장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장신청은 규정의 이행시기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USCG 형식승인을 득한 장비의 본선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된 증거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2. USCG 규정에 따라, 유효한 면제가 없거나 만료된 면제를 지니고 있는 선박들은 하기의 5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평형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 .1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USCG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BWMS의 탑재;
 - .2 USCG로부터 AMS(Alternative Management System)으로 인정된 타국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BWMS의 임시 사용(BWMS 설치 준수일로부터 5년간);
 - .3 미국의 공공용수 시스템으로부터 저장된 평형수의 사용 및 배출;
 - .4 항만수용시설로 평형수를 배출;
 - .5 미국 영해 12마일 이내에서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음
3. USCG로부터 BWMS 탑재에 관한 연장이 허용된 선박의 선주 및 운항관계자께서는 연장기간 동안 하기와 같은 USCG의 규정을 준수하여 선박을 운항해야 합니다:

- .1 33 CFR 151.2040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거나, 미국의 특정 주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한다면, 미국 항내에서 평형수를 배출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200 마일 밖에서 평형수 교환 수행;
- .2 평형수 교환방법을 포함한 평형수 관리계획서(BWMP)를 준수;
- .3 기록유지 및 보고요건을 준수;
- .4 기타 적용가능한 모든 평형수 요건을 준수

4. USCG BWM 요건의 연장신청 접수에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

1	BWMS 설치 준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의 선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기 2항에서 언급한 평형수 관리방법 중 하나의 준수가 BWMS 설치 준수일까지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연장신청은 거절될 것임; 2. USCG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BWMS가 해당선박에게 이용 가능하다고 식별하였으나 선박의 BWMS 설치 준수일까지 이를 설치할 시간이 부족한 선주 및 운항관계자는 상세한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연장허용일 전까지 선박이 어떻게 USCG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BWMS를 탑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의 연장은 최대 18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 3. USCG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BWMS가 해당선박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식별한 선주 및 운항관계자는 설치시기를 포함하여 연장허용일 전까지 선박이 어떻게 USCG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BWMS를 탑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의 연장은 최대 30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
2	BWMS 설치 준수일이 2019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인 선박	1. 동 선박들에 대한 연장신청은 BWMS 설치 준수일 18개월 전부터 USCG가 검토할 예정. 동 연장신청은 USCG 형식승인을 득한 BWMS의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선주는 동 건에 관한 추가의 정보를 제출할 것이 요구됨.
3	BWMS 설치 준수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선박	1. 해당 선박들에 대한 연장신청은 계획에 없으며, 해당선박의 선주는 BWMS 설치일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USCG로부터 AMS(Alternative Management System)로 인정된 BWMS를 탑재한 선박들은 별도의 연장신청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설치된 AMS는 선박별 BWMS 설치 준수일로부터 5년간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선주는 USCG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BWMS가 해당선박에게 이용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만약 이용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AMS의 설치 및 요건의 준수일로부터 5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연장신청은 각 선박별 BWMS 설치 준수일 12개월에서 16개월전에 USCG로 제출되어야 하며, BWMS 설치 준수일 12개월 미만 전에 제출되는 연장신청은 거절될 것입니다. 이는 만약 연장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BWMS의 설치를 준비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평형수 관리에 대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선택사항들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 끝 -

첨부 :

1. Ballast Water Management Extension Program Update - 1부

정 부 대 행 검 사 본 부 장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조선소, 관련 업계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